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2. 5.  
복지도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0. 1. 21.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0. 1. 22.
- 다. 상정일자 : 제235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(2020. 2. 5.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도시계획과장 이정남

### 가. 제안이유

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와 관련한 법제처 협업과제 결과에 따른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임명 및 위촉권에 대한 사항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구청장의 임명 및 위촉권의 제한사항 삭제  
(안 제4조제3항, 안 제17조제3항)
- 2) 위원회 개의 정족수 관련 규정 개정(안 제6조제2항)
- 3)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비상설 운영 규정 신설(안 제17조제4항)

### 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신준호)

#### 가. 조례 개정 배경

법제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차원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함.

#### 나. 주요 조문 검토

- 구청장의 위원 임명 및 위촉권 제한 사항 삭제(안 제4조제3항)
- 위원회 개의 정족수를 당연직을 제외한 도시계획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과반수 출석으로 제한 사항 신설(안 제6조제2항)
- 위원장이 간사 및 서기를 임명할 수 있도록 임명권한 제한 사항 개정(안 제10조제2항)
- 구청장의 공동위원회 위원장 임명 및 위촉권 제한 사항 삭제(안 제17조제3항)
-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상설 운영에서 필요시 운영하는 비상설 규정으로 개정(안 제17조제4항)
-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임기 규정 삭제(안 제18조)

#### 다. 종합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의 조문별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위원 구성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특성 성별 위촉 위원 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고 위원회 개의 정족수는 당연직 출석 개의요건을 전문가 중심으로 변경함. 또한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11조제3항 및 제112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임명과 위촉의 직접 규정

은 구청장의 위원임명 및 위촉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으로 삭제하였으며,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임명에 관한 사항도 상위법 시행령 제 112조제4항 및 제111조제7항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임명권한이 침해되지 않도록 수정하였음.

- 아울러 도시건축위원회는 그동안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 중 자치구 권한 위임 사무 처리를 위해 2015. 12. 31. 구성하였으나, 현재까지 운영횟수가 한 차례에 지나지 않아 위원회의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설에서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함.
- 상기 내용을 살펴본 바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문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으로 위법성은 없어 보임.

다만, 새로이 개정된 조례의 적용관계를 밝히거나 종전의 조례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적용례 및 경과조치의 필요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

 처음으로